

1) [●형제 조실성적]

	식..경찰	질..경찰
실정법상 개념(도·직) 기준	○	×
학문적 개념(질·용) 기준	×	○(독일행정법)
일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없다.)	○(협의행정..)
보통경찰기관이 수행하는 것	○(일치)	△(일부포함)
경찰법§3, 경직법§2의 대상	○(일치)	△(일부포함)
사회목적적 작용	○(포함)	○(포함)
국가목적적 작용	○(포함)	×(제외)
국가별 차이	○(있다.)	×(없다.)

- 2) - 기준(권한과 책임소재), 우리나라(국가경찰 -정치중립 취약), **지방경찰청장은 시도지사 소속**[지휘감독(x)], 유 의- 정치적 성격과 무관
- 3) - 기준(목적, 3권 분립), 최초구분(프랑스 죄 와 형벌법전), 대륙법계특징, **우리나라(조직법상 행정사경구분 없 다.)** ☞ 행정경찰(실질적 의미 경찰과 동일, 경찰청장 또는 주무장관 지휘) ☞ 사법경찰(형식적 의미 경찰에 포함, **검사 또는 경찰지휘관 자의 지휘감독**).

4) [●국내위안]

정전반	고대 중세
부 행정 전반기 <td>경찰 국가 시대</td>	경찰 국가 시대
법치 국가 시대 <td>법치 국가 시대</td>	법치 국가 시대
보 경찰 <td>보 경찰 </td>	보 경찰

- 일체의 정치, 헌법, 중세(교회행정제외)/(14C 말 프랑스 ☞ 경찰(la police)이란 국가목적·국가작용·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15c 말 ☞ 프랑스경찰개념 독일에 계 수)/(16C 독일 ☞ 교회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 예)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 - 미분화

- 정, 교, 사, 법을 제외(●군사재외)/'소극적 치안 유지(위험방지)'+'적극적 공공복리의 증진'을 의미/왕권신 수설, 경찰-절대주의적 국가권력의 기초 - 분화

- 19세기말 복지경찰을 제외,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 [Kreuzberg 판결(1882)]/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자연법 사상의 영향,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 대두(프로이센 반란트법(1794) ☞ "...질서를 지하고..위험을 지하기 ..필요한 관(필요한 치를 ..경찰의 무이다.)"[●일 유방기, 일유조직]/(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1795) ☞ "... 개 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16)"[● 형사재안기] - 분화

- 2차 대전후 비경찰화(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타 행정관 청에 이관, 보안경찰 임무에 국한 - 분화

- 5) [1] **쓰은 사고가설**[→모집단체에서 배제 못 함, 조직부패원인을 개인적 결함에 둬]/ [2] **전체사회가설**[→시민사회 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 의 결론(시카고 시민이 시카고 경찰을)]/ [3] **구조원인가설**( ) [→선배경찰의 부패 가 원인, 법규와 현실의 괴리(출장비사례), 침묵의 규범].
- 6) - [1](작은 호의 가설)[사 소한 호의(부패x, 심리집근-비윤리x, 논리집근-비윤리o) → 큰 잘못 (부패)]/ [2] **비판** - 펠드버그(비현실, 경찰지능모독).
- 7) (Whistle Blowing) [J. Kleinig] - [동료,상사부패 → 감 찰, 외부언론에 공표] ↔ 침묵의 규범 / 요건-[도덕적 동기, 중대성· 급박성, 성공가능성, 보충성].
- 8) - 연혁-[경찰 리헌장(1966) → 경찰신조 (1980) → 경찰 장(1991) → 경찰서비 헌장(1998)●윤새헌스] / 경찰헌장(98)-[ 사하는 절한 경찰, 협하지 않는 로운 경찰, 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정한 경찰, 실하게 수행하는 면 한 경찰, 소하게 생활하는 끄한 경찰 ●봉천타의 양공성근 검개]
- 9) - [1] **부당지시** →(소명 → 따르지x) or (→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반복 → 상담하여야] / ※ **부당 수사지휘** 이의제기관련 행동강령책임관 상담가능(인정되면 소속기관 장 보고의무), [2] **사적이해관계의 신고등**(→ 직무관련자와 사적이해 관계 소속기관장에 신고의무)-[직무관련자 : 자신, 4촌이내 친족, 2 년이내 재직 법인·단체, 자신이나 가족과 관계(대리, 고문·자문, 비율 이상 주식<30%>, 지분<30%>, 자본<50%> 소유), 300만원이상 금전거래, 퇴직전 5년간 같은 부서, 친분, 최근 2년 이내 계약 등], → 중지, 지정, 재배정, 전보 [3] **정치인부당요구**(→ 소속 기관장 보고 or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4] **외부 강의**(→ 소속기관 장에 미리 **신고**하여야-사후 신고는 2일 이내, 5일이내보완)[♣승인 (X)], **월3회** 초과금지, 횡수 상한 초과시 소속기관장 승인, [5] **초과사 례금 신고**- **안날부터 2일 이내** 소속기관장신고, **7일 이내** 반환사 례금 산정통지, [6] :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 속, 특수관계사업자가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친족 제 외)과 → 금전거래, 유가증권거래, 재산거래, 계약, 금전차용(2년 지 난 경우 예외) ⇒ 소속기관장에 **미리 신고**

- 10) [1] 공공기관(선관위O, 사립학교O), [2] 공직자 등(언론사임직원O, 변 호사X), [3] 청탁금지예외(제안건의-선출직O, 임명직X), [4] 수수금지 예외(사적거래O, 증여X)
- 11) [1] **공정한 접근**(→ 차별금지, 전체사회의 필요, 편들기(X)-친 구특혜, **해태(X)·무시(X)**-가난한 지역 순찰누락, 노숙자범죄신고 무시 [2] **공공의 신뢰**(→차력구제금지(직접체포x), **법집행 신뢰**(두려 움으로 회피x), **사익추구 금지**(너물x), **적법절차 준수**(과잉진압x, 등 뒤 총x)) [3] **생명과 재산보호**(사회계약의 궁극적 목적, 폭주족- 과도추적x, 납치-끝까지 추적) [4] **협동과 역할한계 준수**(위배-혼자 검거하려다 농침) [5]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사회전체 이익고려(사 회일부이익x) - 편견(X), 지나친 관여(X), 냉소주의(X), 무관심 (X), - 도둑경험으로 도둑에 가혹행위]
- 12) - [①] **인권**-인간의 존엄, 가 치, 자유와 권리(국가인권위원회법 정의)/ [2] **기본권** - 헌법이 보장 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 [3] **인권침해**-경찰관등(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공무원, 전·의경과 무기계약직을 포함)[♣제외(X)]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
- 13) - ① **위원**장 1명을 포함 **7~13명** 내외의 위 원,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사회적으로 덕 망이 있는 자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 위원회에 간사 1인(간사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위원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 2회 연 임가능**[♣위촉된 날로부터 3년(X)], 재과출과 → 의결, **정기회의(월1 회), 임시회의** →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위원장, 또는 재직위원 1/3 이상**의 요구[♣재직위원 3인 이상(x)]
- 14) - 제정배경(경찰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정 치적 중립을 달성하고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려는 열망) → 방안(경 찰청을 외청으로 독립, 보조기관이었던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을 독립관청으로 변경, 경찰위원회 신설, 경찰을 내무부의 외청으로 둬 으로서 선거부처(내무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지 못함) ★ **해경 해수부이관(96), 청문관제도입(99),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2000), 제주자치경찰출범(2006), 인권보호센터 신설(2006), 운전 면허관리 도로교통공단 이관(2011), 해경 포함 국민안전처 신설 (2014).**
- 15) - 경찰작용의 조건 정도, 목적과 수단 문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참새, 대포),(모두 충족되어야) ex)위반-시간적· 장 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불법집회 참가제지, 근접한 거리에서 얼굴 을 향한 가스총 발사(실명)
- 16) - [1] **행정주체**(국가배상소송피고, 대한민국, 지자체), [2] **행정관청**(의사포시-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 [3] **기관**(구속적 의결- 찬 원회, 위원회)[●경위직계외결], [4] **문기관**(구속력 없는 의견제시- 안행정협의회, 경찰공무원 사위원회), [●] **자치인** [5] **집행기관**(순경-치안총감)
- 17) - 치안총감, **임기2년, 중임(x)**, 국회는 **탄핵소추**의결가 능(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위원판결(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받 기인, 당원 불가규정), 임명(경찰위원회 의, 행정자치부장관 청, 국무총리 유, 국회인사 문회, 대통령 명 -해양경찰청장은 대상 x), 청장유고시 차장이 직무대행(협의의 법정대리), 비상사태시 제 주자치경찰에 대한 지휘·명령권보유[●동태경정임]
- 18) - 경찰법에 근거 설치, 행정자치부 소속의 합의제 의 결기관, 민주적 운영과 정치적 중립, 즉 통제와 참여를 위해 설치된

기구(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장치x, 간접적 참여수단에 불과) ①**구성**-위원장 1인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및 5인은 비상임, 1인은 상임(정무직 차관급), 2법관자격),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장 유고시 상임위원, 연장자 순, ②**결격사유**(찰, 찰, 정원 직원, 인, 직, 거직에서 퇴직(이탈)한 날로부터 3년 미경과, [●경경국군당선].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③**절차**(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 국무총리 거쳐(경유), 대통령이 임명, 고려사항-정치적 중립문제), ④**임기**- 3년, 연임(x), ⑤**의결권한**(인사·예산·장비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사항, 인권보호관련사항, 부패방지, 경찰업무 외의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 협조요청사항, 제주 자치경찰지원·협조관련 사항, 행정장관·경찰청장 부의사항, ⑥**운영**-경찰청에서 사무처리, 월2회 정기회의(위원장이 소집), 임시회소집 요구권(위원3인, 행정장관, 경찰청장), 재과출과, 재의요구권(행자부장관이 10일 이내, 7일 이내 의결해야)

19) - **시도지사소속**[지휘감독x], 경찰청장이 지휘감독, 계급(치안경감, 치안감, 경무관-경찰법/치안경감, 치안감-직제)

20) - 경무관, 총경, 경정으로 보함(경찰법)

21) - ①**승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승인**을 얻어, 지정(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역경찰관서장(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정, 경감, 경위-정원관리규칙) ②**보고**- 폐지·변경(지방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을 때 경찰청장에 보고), 출장소 설치(지방청장이 경찰청장에게 보고)

22) - ①**구성(시·도지사 소속)**에 설치, 위원장은 **부시장이나 부지사**-위원장이 사고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자가 직무대행), 위원장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소속공무원 2인, 지방경찰청장의 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경찰공무원 3인, 시도지사 위촉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인(임기는 2년)) ②**근거**-설치 근거(**경찰법**), 조직·운영근거(**치안행정협의회규정(대통령령)**) ③**성격**- 자문기관, 주민참여와 거리 있음

23) - 경비국관장, 대적방호개념, 18세 이상, 무기휴대허용 ①**법적지위**(**경직법에 의한 직무수행**, 보완적 경비), ②**근무한계**(사항적 한계-**사사x/장소적 한계-경비구역/직무보고(서장)-경직법 직무수행시 서면보고에 앞서 구두보고해야**) ③**배치절차**-a)배치신청 → b)배치결정[지방경찰청장] → c)임용승인신청[청원주] → d)임용승인[지방경찰청장] → e)임용[청원주] ④**무기휴대**-지방경찰청장은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 무기를 대여, 지니게 할 수.(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에 한하여) ⑤**감독·징계**(청원주와 경찰서장(월1회) → 청원경찰 감독./ 지방경찰청장 → 청원주에 필요한 감독·명령/ 청정징계권자-청원주) ≒징계종류(면, 임, 직(1~3개월 직무정지, 보수의 2/3감함), 봉(1~3개월, 보수의 1/3을 감함), 책)[●파해점감권] / ≒처벌(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경직법 : 1년이하)

24) - 상급관청이 하급기관에 대해, 권한행사를 일반적 지휘하기 위해, 대집행권 포함(X),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가능

	훈령	직무명령
주체	상급관청이 하급경찰관청에	상관이 부하공무원에
대상	일반적·추상적 사항 대상이원칙(예외-개별적·구체적 사항에 가능)	개별적·구체적 사항
효력	하급관청이나 훈령발급관청 구성원 변동 → 훈령효력에 영향(x)	수명 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효력을 상실
범위	행정관청의 소관 사무에 국한	직무관련개인사생활까지
관계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훈령성질(X)

25) - ①**형식적 요건**(심사가능 → ①훈령권이 있는 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②하급관청의 권한 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③하급관청의 직무상 립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④법에 정한 체, 한, 차에 위반되지 않을 것)[●상내득 주권절] ②**실질적 요건**(심사불가능 → 공익적합성, 타당성, 내용의 적법성

<범죄구성 또는 명백한 위법은 거부해야> ③**훈령의 경합**(상하관청간 훈령이 경합하는 경우 → 직근 상급관청의 훈령을 따라야) ④**효력**(법규성x).

26)

	원칙	예외
대통령	총경 이상-경찰청장의 천,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총리 처, 대통령이 용[●추제거임]	으로의 규제용·진임용·직-경찰청장(국민안전처장관)의 청, 국무총리 처, 대통령이 명[●경정신승면제거임]
경찰청장	① 경정 이하 임용	경의 보·직·위해제·직·직·등[●전휴직특별강총]
청장	경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과전 및 복직, 경감이하 임용권을 위임가능/ ② 필요한 때에는 직접 임용권을 행사가능	
소속기관 등의 장	경찰청장의 위임시-경의 보·직·위해제·건·직 및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행사[●전휴직특별강총]/ ② (지방청장)소속 경감이하 경찰서내 전보권 → 경찰서장에게 위임가능(인사실무에서 경감이하 서내 전보권은 경찰서장이 행사)/ ③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 -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	
서장	위임이 있을 경우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서내 전보	

27) - 적극요건(공채합격)/소극요건(① 대한민국 국 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② 복수국 자, ③ 피 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⑤ 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⑥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징계에 의하여 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사람, ⑧형량배임 300,2년/성폭력100,3년/미성년 성폭력, 아동법 확정, 집유포함)[●적성파 자유파]

28) - 성적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 하여야,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하여 임명(신입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교육성적순위에 의함), 합격자는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 명부의 유효기간(2년-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가능), 임용의 효력발생 시기-임용장(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 ≒ 채용후보자자격상실사유(임용 또는 임용체제에 불응, 교육훈련에 불응, 수료점수에 미달되어 퇴학처분,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

29) - 시보(적격성 보유여부 확인과 경찰실무를 습득하기 위해 부여한 시험보직) ①**대상·기간**-경정 이하 신규 채용하는 경우, 1년의 시보기간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임용(휴직·직위해제·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기간 제외) ②**면직·정규임용**-[**시보임용예정자**( ) 면직]- 육훈련성적이 만점의 할미만이거나 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교육생은 교육생] / ≒정규임용예정자(시보기간 중) - ① 사유에 해당할 때, ② 육훈련성적이 만점의 할 미만, 활기록 극히 불량, ③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할 만] →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또는 면직을 제청가능- 재 2/3출, 출과).

30) - 직위만 부여하지 않는 것, 제재적 성격, 복직보장(x), 징계처분과 병과가능, ①**요건**(능력부족 or 성적이 극히 나쁜 자-대기명령, 징계위원회의 직권면직 가능/ 중징계의결 유구중인 자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적격심사 요구받은 고공단 일반직공무원) ②**효과**(출근의무 없고, 승진소요최저 년 수에 산입x, 봉급8,7.5할 지급, 사유소멸 시 직위부여해야).

31)

징계위원회 동의 불필요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① 폐 또는 과	① 능력·성적 향상 어려움
② 직무 복귀 혹은 감당	② 능력·성실성의 현저한 여
③ 필수적 자격·면허의	③ 위험 일으킬 려
[● 직권(이) 불미(해) 취소]	[● 어결우동면]

32) [●권신재] - ① 분상권리 ≒일반적 권리(직무행권, 분 보유권(치안총감, 치안경감 및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 제외,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은 예외적 대상), 직위 유권, 쟁 제기권[●집신보송일]) ≒ 수한 권리(복착용권, 기휴대(경공법) 및

사용권(경직법), 구사용권[●제우장 특] ② 산상권리-보수청구권, 연급청구권, 실비변상청구권, 보급품수령권, 보상청구권.

33)

반	공법 ① 실의무, ②선 의무[●일국성서]
무	공법 ① 교중립의무 ② 절공정의무 ③ 중의무, ④ 무전념의무(이경영) ⑤ 령준수의무[●종친복직국법]
법	깃보고·직무유기금지 의무 [●경찰공무원이 거제지!] 복착용의무(권리이자 의무)③ 휘권남용금지 의무
규정	사분쟁에 부당개입금지, ②지 장소와 직무수행 금지 근무시간 중 금지[●민정(이) 음주 복무]
분	공법 예등 제한, ② 령의무, ③ 치운동금지, ④ 밀엄수, 위유지의무, ⑥ 단행동금지[●국영청정비품집신]
기타	공윤법(재산등록·공개의무), 부방법(부패행위신고의무)

34) - 특별권력관계 내부질서유지목적, ①**장계사유**(법령위반, 의무위반·직무태만, 체면·위신손상), ②**장계절차**(**요구-요구하여야(관할o)**, 신청하여야(관할x)/(지체없이-자체, 30일 이내-통보, 3개월 이내-재징계, 양정과다 감봉·견책예외-**아니할 수**)/(요구시효-3년, 금품향응-5년) **의결**-30일 이내, 요구자 승인 30일 연장(국총60일 이내), 출석요구서-3일전, 의견진술기회x-무효 **집행**-처분사유설명서 교부, 경징계(15일 이내), 중징계(임용권자에 제청, 임용권자15일 이내)).

35)

파면	신분박탈, 5년간 공직임용금지(경찰관은 영원히 불가능)	배제
	퇴직급여 5년이상근무(1/2), 5년미만 근무(1/4)감액지급 퇴직수당 1/2 감액 지급	
중해임	신분박탈, 3년간 공직임용금지(경찰은 영원히 불가능) 원칙 원칙적으로 퇴직급여·퇴직수당은 전액이 지급됨	제정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해임 - 퇴직급여[5년 예외 이상 근무(1/4감액), 5년 미만 근무(1/8감액)]- 퇴직수당[1/4감액]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림 3개월 직무정지 및 보수 전액 감액	교정
	정직 1~3개월 직무정지 및 보수 전액 감액	
경견책	감봉 1~3개월 감봉, 보수의 1/3 감액	산)
	공식적인 훈계·경고 조치	

36) 위원(대상자보다 상위계급, 경위이상, 6급이상 소속공무원중, 위원장 제외하고 위원수 1/2이상 민간위원.

종류	관할	설치(소속)
국총중징위	경무관이상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5-7)	
경공중징위	총경·경정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5-7)	
경공보징위 (3-7)	경감이하	주로 경찰청과 소속기관
	경위이하 (소속)	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장인 경찰서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장인 경찰기관
	경사이하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장인 경찰기관

37) - ㉠ 분사유 설명서 교부제도(사전구제), ㉡ 충심사청구[강제성x-중양고충심사위(경정이상, 경공고충심사위 거친 것, 소심위), **경공고충심사위**(경감이하-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경감이상 장>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 청심사청구, ㉣ 정소송의 제기[●처고소행]

38) - 불이익 처분 받은 자 구제하는 특별행정심판, ①**청구**(**징계처분**·강입·휴직·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타 불이익처분**- 처분 있음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소심위** **설치**→(경찰은)인사혁신처 소속 합의제 행정관청에(※각부설치), **구성**-위원장 포함 5-7인 이내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수의 2분의 1이상 비상임위원, 위원장은 정무직/ 임명-(인사혁신처장의 제청 → 국무총리 경우 → 대통령이 임명)/ 상임위원(임기3년, 한번만 연임가능, 겸직금지), **자격**-(금고이상형벌x→면직x/ 별척시 공무원간주)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5년 이상 근무/ 대학에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 담당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근무/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3년 이상 근무]

무] ③**심사·결정**- 의견진술기회x(→무효), 제2/3출에 출과(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과반), 결정서, 불이익변경금지 ④**효과·불복**-소심위 결정이 중전 징계처분에 영향x, but 처분행정청 기속, 재심요구제도폐지, **행정소송**(결정에 불복 또는 60일지나도 결정x, 필요적 소청심사전치주의, 대상-원처분, 피고-경찰청장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자).

39) - **국회경호권**[**파견**-국회운영위 동의, 의장지휘, 회의장건물 밖에서 경호, 증원-국회사무처와 협의/ 체포-회의장 밖(체포→지시), -회의장 내부(지시→체포)], **미군영내**[추적-동의, 중대 현행범체포/ 압수·수색·검증-동의].

40) -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목적 발동(O), 개인의 사생활관계(X)] ①**사생활불가침**[개입(X)-개인의 의복이나 외형상 치장, 개인의 가정불화 등/개입(O)-신체의 과도한 노출, 고성방가 등], ②**사주소불가침**[개입(X)-사 주소 내에서 나체로 있는 행위, 사 주소 내의 청소, 피아노 연주 등/개입(O)-피아노 연주소음으로 인근 주민이 고통을 겪는 경우], ③**민사관계불간섭**[개입(X) **매매**-임대차·채무불이행/ 개입(O) **암표**의 매매, 총포·도검류의 매매 등], ④**사경제불간섭**(상품가격·품질)

41) - ①**요건**-지배범위(기타 불필요), ②**행위책임**-자기행위, 자기지배범위에 속하는 사람의 행위(자기책임 **중립원행위**에 대한 사장책임), ③**상태책임**-물건 또는 동물상태에 대한 현실적 지배권자, ④**복합책임**-선택: 위험방지효율성, 비례의 원칙(일반적으로 행위책임우선, 다수중 일부선택시 나머지 책임 불소멸) ⑤**경찰근거권**(책임 없는 자에 경찰권발동-요건:급박성, 보충성, 법적근거, 3자 특별희생 보상).

42) (경직법) - ①**성질**-불응자 처벌규정(X), 대인적 즉시강제라는 견해와 임의적 수단이라는 견해가 대립, 거절시 강제불가, 최소한의 유형력 가능(손으로 어깨나 팔을 가볍게 잡거나 앞을 가로막을 수), ②**대상**- 어떠한 죄를 범 었거나, 범하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 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해 그 사실을 다고 인정되는 자[●하러안], ③**절차**-**정지**(최소한 유형력) **질문**(증표제시, 소속·성명, 목적·이유고지/ 증표-경찰공무원증, 관례-정복경찰관의 미요구시 미제시-적법, 답변강요금지, 진술거부권고지불필요), **검사**(흉기소지 여부검사가능-대응조치X, 처벌규정X/ 소지품-동의필요), **임의동행**(요건-㉠당해인에게 리하거나 ㉡ 통의 방해가 되는 경우/ 동의필요, 거절가능)(**절차**-증표제시, 소속·성명·합법, 목적·이유고지, 동행장소 밝힘/ 연락 또는 연락기회부여,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 6시간 초과금지, 24시간이내 보고)[●불교]

43) -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보호조치 할 수), 대인즉시강제, ① **보호**( 신착란 또는 술( ) 취한 상태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 우려, ② 살기도자←이것만) ② **보호**( 아· 자· 상자 등, 기아에 허덕이는 노인 포함, 가출인 제외) / **응급구호**-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응급의료**를 요청할 수→거절불가(처벌가능), 병실부족·의사출타는 이유(X), **일시보호**(통지·인계)- 일시보호 시 지체 없이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24시간 초과금지) →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44) - 대물즉시강제,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임시영치증명서 교부, 10일 초과금지

45) -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①**성격**-대인·대물·대가택 즉시강제 ②**수단**-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 경고/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 →역류·피난/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밖의 관계인 →조치를 하게(명령) OR 스스로 조치(강제)/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 →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46) - 범죄행위 목전 → 경고, 제지(제주공항관례, 충남관례-과잉금지 위배로 위법)/ 대인 즉시강제, 필요한도 내, 순차(X)

47) - 대가택 즉시강제, 보충성 원칙, 증표제시,

	예방출입	긴급출입	긴급검색(간첩)
대상	공개된 장소	특별한 제한 없음	작성지역내
시간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	주·야 불문	주·야 불문
절차	동의 요함(거절x)	동의 불요	영장(X)·동의(X)
신분증	모든 경우 신분증 제시해야함		

48) - [●범자공, 범불자공, 현장자공]

경찰장구의 사용	분사기 및 최루탄	무기용(위해×)
- 행방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 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 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 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 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 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 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 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	- 무집행에 대한 항거억제

49) -

경찰장구 관련	분사기 및 최루탄	기타장비 관련
(수갑포승) -영장집행, 호송, 수용 -자살방지(경찰봉) -불법집회 시위 : 타인, 경찰관의 생명·신체, 재산·공공시설의 위험방지	(가스발사총) -범인체포, 도주방지/ -타인, 경찰관 생명·신체방호, 공무집행항거 억제	(가스차살수차) -불법집회 시위 : 타인, 경찰관의 생명·신체, 재산·공공시설의 위험방지 *살수차 배치 사용, 최루액 혼합 - 지청장명령 / 절차방법(경찰청장지정)

50) - 형법상의 당방위와 긴급피난/ 장집행, /장기 년 이상 범죄자 항거·도주, 도주시키려 항거, / 기·흉기 등 위험물건 소지범인이 항거할 때, / 간첩작성(●정영삼 무대)

51) - 갑·승·호송용 승·경찰 호신용경 ·전자격기(14세미만·임산부·얼굴에 사용금지)· 패 및 전자방패(●수포 방방총]

52) - 권 ·소총·기관총·산탄총· 탄발사기·박격 ·3인치포·함포·크레모 ·류탄·약류 및 검][●총포 유수아 폭도]

53) - 근접 사기·가스분사기·가스 사총 및 루탄( 발사 치 포함)[●분발채장]

54) - 가스 ·살수차· 특수진압차· 포· 궁· 다 적발 사기 및 도주 량차단장비[●물차목적]

55) .

경직법	기록, 보관
위해성 장비 규정	④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타장비는 살수차만) 3년간 의무보관 ⑤ 무기 사용보고 → 직근상급 감독자(지휘계통 거쳐)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보고의무

56) .

보상	① 적법한 직무집행, 손실(책임없는 자의 손실, 책임있는 자의 초과손실), 정당 보상 ② 시효소멸 - ③ 보상기준 - 수리비, 교환가액, 영업이익/ 상당인과관계 범위
절차	① 발생지 관할 국가경찰관서장에 제출 ② 통지 - 결정일부터 에 통지 ③ 지급 - (동의로 분할 지급가능)
손보위	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 경찰청, 지방청 ② 위원회구성 등 - 위원장 포함 5-7인(경찰청장 등이 위촉임명), 임기2년, 재과출과

57) .

지급	청장·지청장·서장 - 보상금지급 할 수
----	-----------------------

대상	- 신고, 검거, 검거인도, 예방공로
심사 위	청장·지청장·서장 - 심사위 설치·운영 하여야 - 위원장 포함 5명 이내 위원, 경찰공무원 중 소속장이 임명 - 재적과반수 의결
지급	최고액 5억, 거짓의 경우 환수 하여야, - 30만원 : 장10년 이상/ 20만원 : 장10년 미만 - 10만원 : 장5년 미만, 장10년 이상의 자정, 별50만 초과 - 3만원 : 별50만 이하 동일한 사람 년 5회 초과금지, 동일사건 이중 지급금지, 2명 이상 배분지급 가능

58) - 준수법적 행정처분, 행정소송대상(X).

용어정리	
범칙 행위	① 경범죄처벌법 → 10만 원(또는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행위 ② 도로교통법 →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범칙 자	범칙행위자 →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범칙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범칙 금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 행정제재금(O), 형벌(X) / 납부 → 일시부재리 효력이 발생
처분 권한자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권자 →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59) .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범칙 자 제외 사유	①상습적 범칙행위자 ②피해자 있는 행위를 한 자 ③18세 미만인 사람 ④구류 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상피18구경]	①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 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 하지 못(무면허운전 포함)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한 자 ②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단, 사고에 대한 형벌 면제자는 제외)[●무사제질도]
통고 처분 제외 사유	①통고처분 매우 어려운 자 ②통고처분서 거부한 사람 ③주거·신원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어거주경]	①생명·주소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②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 ③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성거달도동]

60) .

1차 납부	10일 이내 납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통고처분서작성일 기준) * 전재·지변 등(부득) -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2차 납부	① 20일 이내, 20% 가산금 추가 납부 ② 범칙금 납부(X) → 지체 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해야
3차 납부	① 통고처분불이행 → 납부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됨) ② 즉결심판 청구 취소사유 →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납부,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
기타	① 범칙금은 분할납부불가 ② 통고처분서를 분실한 경우 → 어느 경찰서에서나 재발부 가능

61) - 정보공개 원칙(공개하여야)

청구 권자	① 모든 국민, 외국인(일시 체류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 ②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청구가능
대상 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각 급 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 '특수법인' 등
정보 공개 심의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위원장1명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공안기관인 경찰은 위원3분의 1 이상<일반1/2이상>은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정보 공개 위	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②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9인의 위원으로 구성, 임기 2년이고 연임할 수[●구이 연수]
총괄	행안부장관
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 공개하여야 ②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③ 비공개 대상정보도 공개가능
비용	청구인의 부담

62) .

청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 공개청구가능
----	-------------------------------

통보	① 제3자 관련정보인 경우 <b>지체없이 통보</b> 하여야 ②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b>3일 이내</b> 에 비공개요청가능 ③ 공개결정 ≒ <b>7일 이내</b> (7일 연장가능)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가능
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b>10일</b> 이내 결정하여야(10일 이내 범위 연장가능)
판단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이의신청	① <b>30일</b> 이내 이의신청 →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가능 ② <b>7일</b> 이내 결정하고 결과통지하여야(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행정쟁송	① 행정심판 - 이의신청생략 가능 ② 심판전치주의 적용(X)
63)	- 계층제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본업의 원리, 조정·통합의 원리
64)	-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등급화, 명령·복종관계
장점	통일성·일체감 유지 수단, 조직의 안정성 유지, 업무처리·증진의 수단, 신속한 업무처리, 신중한 업무처리의 수단
단점	경직성(새로운 지식·기술 도입이 어려움), 갈등증가·시간지연, 비민주성·독단성
65)	- 1인 상관이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 구조조정문제와 관련(조직규모=계층수, 청사규모는 무관)[●시 제공 성능]
간격 요인	기성조직일수록(오래된 조직일수록) → 통솔범위 확대
조직 층 수	계층 수 단축(작은 규모 조직) → 통솔범위 확대
간격 요인	멀어질수록 → 통솔범위 축소
직무의 질	전문적 업무 → 통솔범위 축소
조직원 력	유능하고 훈련이 잘 된 경우 → 통솔범위가 확대
66)	- 지시는 한사람만이 보고도 한사람에게만, (검사의 수사지휘-위배)
장점	업무수행혼선으로 비능률을 방지, 신속한 업무수행
한계	공백·혼란초래, 위임·대리 또는 유고관리자의 사전지정 등의 대행체제가 필요, 행정전문화와 역할
67)	- 한가지 주업무 분담, '전문화의 원리' 혹은 '기능의 원리'
장점	업무의 능률성·속련성 예) 장기간 형사근무로 조폭검거 등 업무효율성이 높아지는 경우
한계	구성원의 부품화, 전문가적 무능현상, 할거주의로 조정곤란
68)	- 집단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 행동통일, 행동양식조정, 조직목적 달성위해 노력, 조직 제1의 원리(무니), ≒ 방법(통합·연결 대화채널 확보, 상위목표제시, 우선순위 지정, 보류 또는 회피)
69)	- 욕구계층화, 만족진행접근(충족된 욕구는 무의미)[●생애애 존자]
기완성욕구	-공정·합리적 진, -공무원 체인징[●자승단]
경욕구	- 여확대·권한 임, - 안, 상제도[준참위제도]
정욕구	-인간관계 선(비공식), - 중처리의 상담[●애개고]
전욕구	- 제도도· 분보장 [●안연신]
리적 욕구	- 양·휴가제도(휴게), 적절한 수제도[●생휴보]
70)	- 일반회계·특별회계
일반	≒ 중앙정부 예산의 중심 회계제도, 경찰예산의 대부분도 일반회계
특별	≒ 경찰이 운영하는 특별회계(→경찰병원의 세입·세출) ① 국가에서 특별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때[●목적구] 설치 ②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요건 ③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징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음
71)	- ① <b>품목별 예산제도</b> -회계기술 필요, ≒장점-집행내용·책임 명확, 운용이 쉽고, 기본경비에 적용용이, 재정통제(회계검사)용이,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자료제공, ≒단점-신축성 제약, 성과측정이 곤란, 지출목적 불분명(기능중부, 계획과 지출 불일

72)	예산과정 - ㉠ 예산편성[①신규 및 중기사업계획서제출( )/ ②예산편성지침통보( -2015년4월10일까지)/ ③예산요구서제출( -2015년6월10일까지)/ ④정부안 국회제출(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승인 거터 )] ㉡ 국회심의의결( )].
73)	과정에 따른 예산분류 - 본예산(정상의결)/ 수정예산(의결전에 수정)/ 추가경정예산(의결후 추가)/ 준예산(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의결안된 경우-㉠ 영비, ㉡ 상지출의무, ㉢이미 인).
74)	예산 이용(장관항-입법과목, 국회승인, 기재부장관승인)/전용(세항, 목-행정과목, 기재부장관승인)
75)	예산결산 - 중앙결산보고서 2월말까지(각중앙관서장→기재부장관)/ 국가결산보고서, 4.10까지 (기재→감사원)/결산검사, 5.20까지(감사원 →기재)/ 국회제출,5.31까지
76)	.
회수	① 징계의 대상(직무상 비위 등)
해야	② 형사사건의 조사대상자 / ③ 사의를 표명
회수	① 직무적성 고 협근/ ② 정신건강상 문제, 료가 필요
할수	③ 정서적 불안 상태로 부적합 소속 부서장의 청 ④ 그 밖에 경찰기관의 장이 심의를 청 무기소지 적격심의위 거처
보관	① 술자리 또는 연회 장소에 출입할 경우
해야	② 상사의 사무실 출입할 경우/ ③ 기타
77)	- ① '사람만 알아야하는 원칙' ② '문화의 원칙' ③ '보안과 효율 화의 원칙' [●알부조]
78)	- ① "도·과소분류 금지의 원칙" ② "국비밀 존중의 원칙" ③ "립분류의 원칙"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과외독]
79)	- ① 누설시 외교단절, 쟁우발, 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 ② 누설시 국가안보에 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③ 누설시 국가안보에 를 끼칠 우려, [●전과(있으면) 막대한 손해]
80)	- ①제한 역-궤시, ②제한 역-안내, ③ 제구역-금지< 호취급소, 호장비관리실, 합상항실·치안상황실, 합조회처리실, 기창 및 탄약고, 보안안기록실, 밀발간실, 보상항실-●암암 종종 부정비정> [●지구통 - 감안금]
81)	- ① <b>민주통제</b> -경찰위원회제도, 자치경찰제도, 경찰책임자 선거제도, 영미법계(관례법국가로 법원이 강력한 통제장치)에서 발달, ② <b>사법통제</b> -국가배상제도, 행정소송제도, 대륙법계에서 발달
82)	- ① <b>사전통제</b> -정보공개 청구권, 행정절차(입법예고제와 행정예고제, 청문·공청회절차·이유제시, 이유부기 등)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권, 인가권(승인권) ② <b>사후통제</b> -(①입법부(국회)-행정감독권(국경감사·조사권 등)·예산결산권 등, ②사법부-사법심사(행정소송, 국가배상 등),③행정부-상급기관의 감독권(감사권), 행정부 내의 징계책임·행정심판 등)
83)	- ① <b>내부통제</b> -훈령권·직무명령권, 이의신청 재결권, 청문감사관제도(경찰감찰규칙-금품·성폭력관련 징계전력은 감

- 관할 결격사유, 접수 2개월 내 민원사건처리, 기관통보사건은 1개월 내 처리, 심야조사 금지-심야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2]외부통제-입법통제, 행정통제(경찰위원회), 사법통제
- 84) - 예방과 진압의 불  
가분성, 현실과 범규범의 괴리, 행정조직원리의 위배(명령통일의 원리위배),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해소.
- 85) 검찰개혁 형소법(시행미정)-검경 상호협력,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및 경찰의 의무적 보완수사, 불기소기록 검찰에 90일간 송부 후 반환, 검사의 시정요구 및 기록송부의무, 수사경합시 검사의 송치요구권 및 경찰의 영장 이미 신청 시 예외, 검사의 영장기각에 대한 불복(고등검찰청-영장심의위원회), 경찰의 사건불송치시 7일 이내 고소고발인통보의무, 불송치에 대한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 및 의무적 검찰송치, 검사의 재수사요청권 및 경찰의 의무적 재수사
- 86) - 범죄는 범규범에 대한 위반행위, 각 시대의 사회적·역사적·문화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 상대 개념
- 87) (Joseph F. Sheley(실리)-범죄의 필요조건o, 충분조건x) - ①범행 기, ②범행 회, ③범행 술, ④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유[●동기기치]
- 88) (G. Sykes & Matza)-책임의 부정(술에 취해서라는 핑계), 가해의 부정(훔친 것이 아니라 빌었다는 핑계), 피해자의 부정(여자가 여관까지 따라왔다는 핑계), 비난자를 비난(단속 경찰관 비난), 충성심에 호소(우정 때문이라는 핑계)
- 89) - 1차 예방(일반 대중 대상, CCTV설치 등, 일반예방)/ 2차 예방(우범집단, 잠재적 범 죄자가 대상)/ 3차 예방(범죄자가 대상, 특별예방)
- 90) - 범죄억제모델, 사회복귀모델, 환경개선모델(CPTED-물리적 설계·주민참여·경찰활동/ 자연적 시(가 시권 최대한 확보), 자연적 근통제(정해진 공간으로 유도, 출입통제), 역성 강화(경계표시), 동성 강화(공공장소 이용), 지관 리(청결유지))[●감점 영활유]
- 91) - ①**환경범죄이론**(생태학이론, CPTED, 방어공간이론, 환경에 쉽게 적응), ②**상황적 예방이론**(범죄기회제거, 자유 의지 전제, 비결정론적 인간관, 비판-풍선효과, 요새화된 사회, ①합 리적 선택이론< - 력증가, 협증대, 상감소, 극감소, 명계거>[●노위 보자범]/ ②**일상활동이론**< 헨과 슨- 범죄 ( 차이동 이성· 시성· 근성), 범죄 상, 보호자 재> [●코벨, ●자대부, ●가용가점] ③**집합효율성이론**-상호신뢰, 연대감, 적극개입, 비공식 통제의 결합, ④**개인유리향 이론**-사소한 무질서 가 심각범죄인인, 윌슨과 켈링, 줄리아나 뉴욕시장, 브래튼 국장, 무 관용 원칙, 주민협조, 낙인효과.
- 92) - 정근무(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 황근무(중요 사건·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전파), 찰근무(112 순찰 근무 및 야간 순찰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계근무(반드시 2인 이상 합동지정), 대기근무(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기타근무(규정이외 근무)[●형상순경 대 기]
- 93)
- |      | 전통적인 경찰활동   | 지역사회 경찰활동         |
|------|-------------|-------------------|
| 역할   | 범죄해결 우선     | 문제해결이 우선(예방)      |
| 활동대상 | 범죄사건        | 범죄사건+주민의 문제와 걱정거리 |
| 평가기준 | 범인 검거율      |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      |
| 효율성  | 범죄신고 경찰반응시간 | 주민의 경찰업무에 협조도     |
- 94) - 변보호(추가장비필요), 송경비(추가장비필요), 설경비, 수경비(공항(항공기를 포함)등 국가중요시설경비), 계경비(추가장비필요) - (자본금1억, 3억-특수) [●신호시특기]
- 95) -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출판물 당계재, 짓광고, 업무 해, 표매매), 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10·20이하 벌 구과 모두 통고처분 대상[●암방거부]

- 96) ➡ 아동등(실종 당시 18세 미만,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자폐성장애인, 치매질환자), 실종아동 등(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 보호시설(인가·신고 및 인가·신고 없는 시설 포함)
- 97) ➡ 장기실종아동등(신고 접수 48시간 경과-발견X)/ 가출인(실종신고당시 18세 이상), 치매환자(실종아동 등에 준, 발생지-목적·목적추정으로 진술한 장소, 예외-진술 못하거나 대중교통수단인 경우 또는 1개월경과 시 최종 주거지)
- 98) - 관찰불문 접수, 신고접수증 발급가능, 선조회·등록 후 인계, 위치정보제공요청가능(서장-사업자), 실익 없거나 곤란하면 탐문·수색 생략가능,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 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 입력[프로파일링시스템- 종아동등, 출인, 연고자, [●실무기] / 홈페이지- 종아동등, 연고자][●실무]
- 99) - 개최(여청과장이 살인·강도·변사사건 등 강력범죄 의심시 회부 및 서장이 개최할 수[♣약취유인(X)]), 구성(서장이 위원장, 여청과장, 형사과장 등 과장 3인으로 구성), 결정(안건회부 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하여야)
- 100) - 폭력제지수단 강구, 가정보호사건처리,  
가정 구성 원 폭력 범죄  
① 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 부모와 자 또는 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 )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있었던X)[●배계계적 동거중]
- 예훼손, 대, 욕, 기, 물손괴, 갈, 박, 해, 동혹사, 거·신체수색, 포·금, 간·강제 행 [●명학 모유재공협상 아주 강요 폭행 체감 강추]
- 101) - 아동·복지시설종사자(신고의무o-과태료), 응급조치의무(경찰권한-증표제시, 진입, 제지·분리·수사, 상담소(반대·불가)·의료기관(반대·불구) 인도, 임시조치통보), 임시조치(가폭제발우려 시 경찰신청→검사청구→법원이 ⇒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긴급임시조치(사법경찰관-재발우려, 긴급, 직권·신청/주거·점유방실 리, 100m이내 근금지, 전기통신 근금지[●격접접], 위반-과태료/ 사후조치-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작성→검사에 임시조치 신청→법원에 48시간이내 임시조치 청구하여야).
- 102) 아동학대범 - 아동(18세 미만)/ 아동학대범죄(가폭범죄 + 미성년자 약취, 인신매매, 유인 등)/ 신고(할수, 기관-하여야, 과태료)/ 현장출동(경찰, 전문기관-출동하여야), 상호동행요청(응하여야)/ 응급조치(하여야-제지, 격리·분리, 인도/ 임시조치 청구는 <검사임시조치 청구시 예외>), 긴급임시조치(격리, 100M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검사는 긴급임시조치 48시간 이내 임시조치 청구해야)
- 103) - 비상근무, 비상소집, 지휘본부의 운영, 비상연락 체계의 유지 등을 규정, 경찰지휘본부-경찰청·지방청은 치안상황 실에 설치원칙, 필요한 경우 현장인근에 현장지휘본부를 둘 수  
갑호비상 연가중지, 가용경력100%동원가능(지휘관·참모-정착근무)  
을호비상 연가중지, 가용경력50%동원가능(지휘관·참모-정위치근무)  
병호비상 연가억제, 가용경력30%동원가능(지·참-정위치·지휘선상근무)  
경계강화 지휘관 참모 - 지휘선상 근무를 원칙  
지휘선상위치근무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근무 가능장소 위치  
정위치근무 관할구역 내에 위치  
정착근무 사무실, 현장에 위치
- 104) - 정해진 순서(x), ①**간접적 실행행사**-경고(사실상 통지행위, 임의처분, 구두·문서·게시 등, 비례원칙적용) ②**직접적 실행행사** ㉠ 제지(대인적 즉시강제, 강제해산, 주동자 및 주모자 격리, 무기사용, 무정차 통과) ㉡ 체포(형소법에 근거).
- 105) - 추회 측 책임, 24시간 전 지청장 통지요

청가능(처벌규정X), 공연장운영자 재해대책계획신고(시장 등에 신고, 소방서장 통보 - 위반 시 2천 이하 과태료), 공연장 외 1천명 이상 공연 14일 전까지 신고, 7일전까지 변경신고(완전관리 인력의 확보 배치계획 포함), 주최 측 요청 시 주최 측 책임 하에 경찰력 지원, 월드컵이나 올림픽X,

106) -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 긴급구조지원 기관(경찰), 재난관리체계(예 단계-평가활동/ 대 단계-메뉴얼 작성/ 대 단계-현장구조/ 복 단계-재난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대통령) 1[재난상황실-재난관리4단계구분(☞ 심(발생가능성 적은단계), ☞ 의(징후 비교적 활발, 일정수준 경향), ☞ 계(징후 활발-농후), ☞ 심(발생-확실시-예외적 반드시 설치)에 관계없이 설치가능(●관주경각) 2[경찰통제선- 초기부터 넓게, 제1선(소방), 제2선(경찰), 출입구 단일, 3[명찰정보 지원센터 - 경찰통제선 밖에 설치

107) - 1[정책적 치료법-(☞ 승승화법(사전해소), ☞ 연정화법, ☞ 이법(경이적 사건 폭로), ☞ 쟁행위법(반대 대중의견 부각, ex)지하철과업)] 2[진압의 기본원칙- 쉐어, 단, 제, 력분산, 동자격리(●봉방 차배세주) 3[다중범죄진압 원칙-① 속한 해산, ②주모자 포, ③ 집결방지(●3대신체제]

108) - 테러단체(UN지정), 테러위험인물(테러예비등 의심), 외국인테러전투원(이동시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장-국무총리).

109) - 테러취약시설(경찰청장지정, 국가중요시설(국방부장관지정), 다중이용시설(관계행정기관장 지정)-A[광범위, 결정적 본기1회 서장 지도점검], B[일부, 중대, 반기1회 서장지도], C급(제한, 상당, 반기1회...)

110) - 1[리마중후군(인질범이→인질에 동화, 페루의 수도 flak) 2[스톡홀름 중후군(인질-인질범, 스웨덴 수도, 오귀인 효과).

111) - ①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②자기희생의 원칙 ③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④목표물 보존의 원칙(='보안의 원칙'-행사장비공개, 동일장소회피, 도보행차제한) [●하자담보]

112) - 1선(경호실), 2·3선(경찰)/ 을·병호(경찰), 외빈EF(경찰) 1[국내요인]☞갑호(①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②(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③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대당10권] ☞을호(①퇴임 후 10년이 경과한 전직대통령, 대통령선거후보, ②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신후의대 현충] ☞병호(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113) - 분류: '가'급(광범위 작전, 결정적 영향), '나'급(일부, 중대한 영향), '다'급(제한된 지역, 상당한 영향)/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경비, 관계행정기관장과 국정원장-감독, 지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지원, 시설관리자-방호책임(지청장, 군사령관에 협조요청가능, 평시 경찰력지원X).

114)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고속도로”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보도”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일시정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115)

주의 표지	위험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알리는 표지 (예)
규제 표지	각종제한·금지 등 규제를 알리는 표지 (예)
지시 표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알리는 표지 (예)
보조 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 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노면 표지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 노면의 표지 (예)

116) - 자동차 등, 자전거 / 정지(0.03%이상), 취소(0.08%이상)-19년6월부터, 위드마크 공식(합헌)-시간당 감소 0.008%/H

117) - ☞ 적용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①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벌점 15점 부과/ ② 벌점 2배 가중 → 호· 시위반, 도위반, 행자 보호의무불이행(●신지속보]

118) ☞ "어린이통학버스"-어린이(13세 미만) 1[ - ①정차하여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 -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 →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의무/ ② 앞지르지 금지 2[ - 안전한 장소에 도착확인(무(동승x → 하차), 출발시 안전벨트 착용확인(무, 운행종류 후 하차여부 확인. 3]

119) -1[특례 ☞ ①자동차의 제한 도, ②앞지르기의 금지 기 및 앞지르기 금지 소, ③ 어들기 금지(●속시장끼) → 사고 책임(x)/ 2[ 권 ☞ 양선 침범, 호위반 →사고책임(O)[●중신우선]

120)

제1종	대형면허, 특수[19세 이상(1년 이상), 보통·소형(18세 이상)]		
제2종	보통·소형(18세이상), 원동기(16세이상)		
연습	1종 보통, 2종 보통		
	18세 이상		
	승합	화물	특수
1보	15인 이하	12톤 미만	총중량 10톤 미만
2보	10인 이하	4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 "대보소 특, 보소원, 1보 2보"

121) - 정신질환자·간질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1종 대형·특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마약·대마·향정·알콜 중독자(대통령령).

122)

시	① 성검사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 →면허취소 / [●적적불이득]
응시	② (제1종) 성검사에 합격 → 제 2종 운전면허취득시
기간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
월	년 발급제한사유 → 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일원유]
1년	2~5년 이의 사유[●음무사벌법(예) 주운전, 면허, 교통 고, 점조과, 행자부령, 죄행위에 차 이용
2년	① 회 이상 면허운전 / ② 회 이상의 주 / ③ 음주운전(무면허포함) 교통사고 ④ 회 이상 동위험행위(무면허 포함) / ④ 자동차등을 거나 빼앗아 면허취소 / ⑤ 면허시험에 응시 / ⑥ 허위 그 밖의 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3음3무 공2 출친 대부]
3년	① 회 주(측정 포함)(무면허 음주포함) + 교통 고 / ② 죄(흠치거나 빼앗은 사람 포함 모든 범죄) + 면허운전
4년	음 운전, 과 (질 · 물)운전, 면허운전, 동위험행위 이외 사유로 사고-미조치·미신고
5년	① 음 운전, 과 (질 · 물)운전, 면허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포함), 동위험행위-미조치·미신고[●주로병약무공]
	② 무면허나 음주운전 + 사망사고

● "적적불이득" "일원유" "음무사벌" "3음 3무 공2 출친 대부" "3음사, 범무" "주로병약 무공"

123) - 생계수단, 3년봉사, 도주검거 표창/ - 음주0.1초과, 음주 인피사고, 측정불응or도주or경찰관폭행, 5년이내 3회이상 인피사고, 5년이내 음주전력

124) - 피해회복의 신속한 촉진 목적(합의 또는 중합보험가입시 처벌x)/ 예외) 주(특가법), 망사고, 외12개 항(과속, 음주, 신호·지시위반, 중침, 승객추락, 철길, 앞지르기, 무

면허,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보도침범, 화물주라방지), 측정  
응, 상해(합의시 처벌x) [●도사예불중]

125) - 독일 제국법원, 과실범 처벌완화, 적용 안되는 경  
우(위반한 경우, 미리 발견한 경우, 믿을 수 없는 경우-○횡단보도  
사고, 미리 발견한 고속도로사고).

126)

성	○전략정보(국가정보·전술정보(부문정보), ○방첩정보(대정보)
(사용)수	○국가정보(전략정보), ○부문정보(전술정보) [●수술력]
	○보호정보(공개비밀), 주기성여부(정기·우연), 입수단계(근본·부차)
형	○직접정보, ○간접정보 [●형간직]
(목적)	○적극정보, ○보안(소극)정보
(분석)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사용)	○내부정보, ○외부정보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산업정보
(수집)	○인간정보, ○기술정보(신호정보·영상정보)
	○국내정보, ○국외정보
	○일반정보, ○범죄정보, ○보안정보, ○외사정보, ○교통정보

127) - 목적: 합법적인 집회·시위보호(기본권, 직접위험이 명백  
한 경우 해산·금지 대상), 주최자(자기이름, 자기책임), 주관자(주  
최자 위임), 경찰관서(국가경찰관서).

128) ○ 옥외집회(천정이 없거나, 지붕  
이 없거나), ○ 시위(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  
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기세),) ex) 군작전지  
역(부대장에 신고), 대학, 도로, 지하철, 옥내집회 후 행진 / 1)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옥내, 학문·예술, 자동차 건설기계, 해상시위·  
공중시위.

\* 신고대상 - 군작전지, 대학구내, 도로·역광장등, 옥내집회 후 행진,  
지하철·철도역사·대합실 [옥내X, 학문·예술등집회X, 공중·해상시위  
X, 자동차·건설기계·농기계시위X, 자동차전용도로 시위X]

129) - 1) 필요적 금지[100미터 이내금지-국회  
의사당각급 법원헌법재판소 / 대통령관저·국회의장공관·대법원장공  
관·헌법재판소장공관 / 국무총리공관(다만, 국무총리공관의 경우 행  
진은 가능함), <총리공관, 각급법원,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현재소  
장공관 -위헌으로 19년 12월 말까지만 적용> 외교기관·외교사절  
숙소-휴일·확산우려·대상x(기능, 안전X)·공중이용시설 제외-외교  
관주재공관·일부국체기구(8군사령부내 미공보원)·일부외국문화원  
(미일중) 2) 임의적 금지○교통소통제한-대통령령 주요도시·주요  
도로→금지·제한가능/ 질서유지인○금지불가(교통불편우려○금지  
가능), ○일반장소상 제한(시설보호요청→금지·제한통고 가능) -  
주거지 유사지역(엄격·제한적 적용),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대학고X),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외국군사시설포함) 3) 시간  
제한-[일몰에서 자정까지 - 야간집회금지(위헌)]/ [자정에서 일  
출까지 - 야간집회금지(합헌)]

130)

집회·시위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 신고  
(∴ 신고할 수 있는 '집회의 최장기간' → 29일)

1의 경찰서 관할	⇒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
2이상 경찰서 관할	⇒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
2이상 지방청 관할	⇒ 주최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
“접수증 교부”	

① 보완통고(접수증교부시부터) → ② 금지통고(신고서접수  
12시간 이내, 24시간 기한) → 48시간, 제한통고-제한x)

131) - 10일 이내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가능, 24시간 이내에  
제결해야, 인용제결 또는 접수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결서를 발  
송x → 소급 효력 상실 →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시위 개최가  
능(시기 놓친 경우 24시간 전에 신고로 가능)

132) ○ 질서유지인 임명(18세 이상, 자격규정x),  
종결선언의무, ○확성기 사용제한(모든 집회가 대상, 소음유지·사  
용중지·일시 보관가능, 피해지역 건물외벽(벽1-3.5m, 바닥  
1.2-1.5m)에서 측정, 담당공무원 참여로 객관성 유지, 경찰의 소  
음유지or사용중지명령·일시보호조치 후 위반처벌 - 기준 : 주거지·  
학교주변(주-65db, 야-60db)/ 기타지역(주-75db, 야-65db))

133)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히 초래) - ①종결선언요  
청(생략가능)→ ②자진해산 요청(반드시 자진해산이란 용어 사용  
필요x) → ③해산명령(3회 이상, 서장권한, 대리가능) → ④직접해  
산(직접강제).

134)

비합법기술잠복	자연속(비합법), 비트굴설
비합법자연잠복	자연속(비합법), 자연적지리조건, 지형지물이용
반합법기술잠복	사람속(반합법), 유흥업소 등 동거동숙
반합법업호잠복	사람속(반합법), 포섭된 대상의 업호

135)

유형	특징	장점	단점
단일형	단독활동 점조직	보안유지, 대남간 첩이 많이 사용	공작성고가 낮음
삼각형	3명이내의 행동공작원 포 섭, 횡적 연락 차단, 지 하당 구축	보안유지에 유리, 일망타진 곤란	행동공작원 검거 시 주공작원(간 첩) 정체 노출
서클형	합법적 신분용 이용	대중적 조직·동원 가능	외교문제가
피라 미드형	간첩 밑에 주공작원을 2~3명, 주공작원 아래 2~3명의 행동공작원	활동 범위가 넓다.	조직구성에 시간 많이, 노출이 쉬움
레포형	피라미드형 조직,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 락원, 중첩으로 연결, 현재 사용x		

136)

- 1) ○ 미수·예비·음  
모대부처분별(예외 → 고지죄, 수직무유기죄, 고날조죄-●  
불특무 미안) - 국가단체구성·가입죄, 적수행죄, 진지원죄,  
입·탈출죄, 의제공죄, 적단체구성죄 등의 범죄 .음모·미  
수를 처벌[●반목자 잠편이 예비] 2) - 편의제공  
죄, 선동·선전 및 권유죄 3) - 국가단체구성·가입·  
가입권유죄, 적수행죄, 진지원죄[●반목자 불고기] 4)  
- 반국가적 범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형의 집행을  
종료(X) 또는 그 집행을 종료·집행(X)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범시 법정최고형이 사형 5)  
○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가능, 6) (불기소시에도 폐  
기처분 국고귀속을 명할 수) 7) (2회이상 불출  
석시), -사법경찰관 1차, / 검사 2차 각각 10일씩  
(총50일 가능) \* 예외(연장 불가) ○ ‘ 양·고무죄’ 및 ‘ 고지  
죄’, ‘ 수직무유기죄’와 ‘ 고·날조죄’[●찬불특무 연불] 8)  
-2년경과시 소추 불가, 공소보류취소 시 재구속·소추가능, 9)  
○ 요적 감면[ 고지죄(본범과 친족관계), 수한 때, 해  
한 때-●불자방 필]/ ○ 의적 감면[ 의제공(본범과 친족관계),  
수직무유기(본범과 친족관계)-●특면임]

137)

- 지위와 역할의 차이에 따라  
법정형의 차등, ○정부를 함칭(정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  
X, 일반인이 오인할 정도면 충분)하거나 ○국가를 변란[정부를  
전복,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 자연인 사임교체(X), 조  
직·제도의 파괴·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138)

○주체(반국가단체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 ○  
간첩죄-기밀등기에 따른 법정형 구분

139)

-주체(반국가단체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 제외),  
목적수행죄에 규정된 행위(간첩죄 등), 구성원 또는 지령받은 자  
지원목적 필요.

140)

- 대통령령, 압수물, 취득금품의 1/2 범위, 법무부장  
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141)

- 란죄, 반이적죄· 시군수  
계약불이행죄, 순반란불고지죄 등, 국가단체구성·가입·가입권  
유죄, 양·고무죄, 함·통신죄, 고지죄, 수직무유기죄, 고  
날조죄[●내일전반찬회 불특무]

142)

○ (보안관찰 당범죄 또는 경합  
된 범죄, 고 이상의 형, 그 형기합계가 년 이상, 형의 전부 또



- 는 일부의 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재범위험성, 처분기간(2년)[●해금3집], (면제할 수)(① 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 ②일정한 거와 생업이 있을 것,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보증인이 있을 것(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준주신] (①출소 신고-2개월전, 거주예정지 서장에, ②출소 신고-7일 이내 출 사실신고, 7일 이내 동사향 신고)[●전후 소변]
- 143) - 기본절차(취소 및 기간갱신의 절차도 동일) (청구(검사) → 심의의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위원장 포함 7인, 임기2년) → 처분의 결정(법무부장관))
- 144) (2년, 갱신기간도 2년, 기간진행정지-집행 중지결정, 징역·금고·구류·노역장유치·보호감호·치료감호집행 중), (기간만료2월전까지 청구, 횡수무제한) (60일 이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 (검사가 서면으로 서장을 지휘하여 실시, 신고의무와 지시이행의무) (①7일이내 초신고, ②3월마다 기신고, ③ 시신고-7일 이내 동신고, 10일 이상 여행 등 사전에 전신고)[●최정수 변이] (지시이행의무(가택보호처분X, 주거제한요소O-회합통신금지, 불법 집회출입금지, 출석요구)
- 145) -도주, 1개 월 이상 소재불명, 관할서장이 검사에 신청, 검사의 집행중지결정, 법무부장관에 보고, 기간 진행이 정지
- 146) 5년 이상 주소, 영주체류자격, 성년, 단정, 생계능력, 소양.
- 147) - ①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19세 이상 외국인,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 지자체의원 및 단체장 선거권보유 ② 19세 이상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 148) - **등록의무**- ①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②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그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 ③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 **여권·사증 휴대·제시의무** - 위반 100만원 이하벌금 **체류자격 범위 내 활동**(이외 활동은 법무부 장관허가).
- 149) - 공중위생, 총기류, 대한민국 이익, 경제질서·선량한 풍속, 구호, 강퇴5년, 기타 법무장관 인정 [●공총이 경선구강오인]
- 150) : 수사-1개월, 기소중지-도주-3개월, 영장발부시-유효기간 / 기타 - 내국인 출금(6개월), 외국인 출국정지(3개월) - 최근 개정
- 151) - 여권, 사증, 허위초청장, 출국·입국위반, 상륙위반, 체류위반, 근무위반, 준수사항위반, 등록의무위반, 금고이상 석방, [●여사허위출입상제근무준수 등 석방]
- 152) - 강제력 수반 제외 폭넓은 공조, 조약우선주의(조약은 공조범위 확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임의적 공조 제한사유**(①대한민국 권·국가안전보장·안녕질서·미풍양속 해할 우려, ② 중·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 형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우려, ③공조범죄가 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 ④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⑤ 중이 없는 경우[●주인정 구보])
- 153) - 조약우선주의, 명시적 규정X(최소한의 중요성, 군사법불인도, 유용성의 원칙), 장기1년 이상 범죄가 대상(최소한 중요성과 연관)
- 154) [●원성(품을) 계속 의심(하는 건)]

절대 평등(아님) ● 영국 외 계집 3인]

절대(7)필요(8)적 인도거절	임의적 인도거절사유
1.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1.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역에서 범한 것
2. 인도범죄관련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중, 재판확정	2. 범죄인이 대한민국 민인 경우 인도범죄 의 범죄에 관하여 한국 법원에 재판이 속 중, 행
3.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3. 중
4. 원칙 위배 → 처벌,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	4. 인도범죄로 제 국에서 재판을 받고 확정된 경우
5. 정치범 불인도(8조원수가해조항 예외 - 국가원수암살범, 형공기 납치등)	5. 범죄인을 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155) - 조약체결국(외교경로), 조약미체결국(상호보증서)/ 대상-수사 또는 재판, 집행(내사X).

156) 인도청구서의 접수(외교부) → 외교부장관의 조치 →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 서울고등검찰청의 인도심사청구 → 서울고등법원의 심사·결정

외교부장관	형식적 사항 확인 (형식적 사항을 확인 후, 법무부장관에 송부)
법무부장관	① 실질요건 심사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않고, 외교부장관에 통지해야) ② 인도심사청구명령 (인도가 타당, 서울고검 검사장에게 송부하면서 인도심사청구를 명하여야)
서울고검 검사장	① 소속 검사에 대한 심사청구명령(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서울고등법원	① 관할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② 변호인 선임가능, 심문기일 절차 공개원칙, (구속중)2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의무, 불복신청 불인정

157) - 사무총국이 연락·협력업무수행(리용), 국가중앙사무국(우리-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

158) [기본원칙(주권의 존중, 일반행법의 집행, 보편성(지리·언어 등 요인에 방해X), 평등성(재정분담규모에 관계X), [공조사항(①국제범죄의 보 및 료교환, ②국제범죄의 일증명과 과조회, ③국제범죄에 관한 실 확인 및 그에 대한 사, 예 국제범죄인에 대한 소재 수사)[●동전(으로) 정자 사조] [공조한계(수사권X, 수사관X, 구속·체포권X, 정치·군사·종교·인종문제 개입금지]

159)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로 인정-즉시체포/불인정-입국사실통보.

색수배서	Red notice	범죄인 를 복적(장기2년 이상, 체포·구속영장 중 - 강력범죄 관련사범, 조직범죄, 다액(5억 원 이상)경제사범, 사회적 과장 등 사안의 중요성, 기타 수사관 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
색수배서	Blue notice	정보조회수배서(피수배자 원· 재확인)
색수배서	Green notice	상습국제범죄자의 향과약 수배서
색수배서	Yellow notice	출인· 역상실자의 소재 및 신원과약
색수배서	Black notice	망자 신원확인목적
렌지수배서	Orange notice	발물· 리범(위험인물) 등에 보안경고(Security alert)
장물수배서	Stolen property notice	도난 혹은 불법 취득 물건 대상
자주색수배서	Purple notice	(수배수배서)범죄수법 등을 회원국에 배포할 때 발행(Modus operandi)
INTERPOL-UN 수배서	INTERPOL-UN Special notice	UN과 INTERPOL이 협력하여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체제를 목적으로 발행

● "적인도" "살인강간 중 오욕" "정신소, 녹동, 황가기, 흑사, 오폭테"

★ 출제위원의 포스, 한상기 경찰학이 여러분의 합력을 기원합니다.★